

# 예산총칙

2021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21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524,085,628	15,722,569
일반회계	495,283,010	14,858,490
특별회계	28,802,618	864,079
기타특별회계	28,802,618	864,079
상수도사업	3,384,883	101,546
하수도사업	4,620,701	138,621
행복주택사업	1,544,104	46,323
수질개선	8,043,722	241,312
자활 및 생활안정기금	566,955	17,009
의료급여기금	688,377	20,651
소득특화사업	6,000,000	180,000
농공단지조성사업	3,573,056	107,192
공영개발사업	274,520	8,236
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발전사업	106,300	3,189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붙임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조서 : "해당없음"

제 4 조 계속사업조서 : "해당없음"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붙임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9,353,822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9,9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다음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1.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
2. 재해대책 및 복구비